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영유권 인식*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崔 長 根**
(e-mail: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전의 독도 영유권 인식
3.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
4. 한국의 평화선선언에 대한 합법성 인식
5. 독도의 폭격훈련장 해제에 대한 영유권 인식
6. 한국의 ‘죽도’ 점유에 대한 ‘죽도’ 영유권 인식
7. 일본순시선에 대한 발포사건과 ‘죽도’문제
8. 맺으면서

1.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한 경위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경위는 어떨까?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한국이 독립되었고 한국이 한국독립과 더불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 본 연구는 2010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공
1) 下條正男(2006)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109.「竹島問題」 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 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www.kci.go.kr

1951년 9월 5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일본영토의 범위에서 분리시켰다. 그렇다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규명된 바 있다.[2] 그 성과로서 연합국은 분쟁지역 중에서 무인도의 경우는 지위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유인도의 경우는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3] 독도의 경우는 연합국이 평화조약에서 무인도로 취급하여 영토지위를 규정하지 않고 회피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되기 직전에 평화선을 선언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선행연구[4]에서 활용한 바 없는 최근 공개된 일본국회 의사록을 분석하여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의 추이를 고찰하려고 한다.[5]

연구방법으로서는 대일평화조약 체결이전, 대일평화조약,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언과 일본어선 나포, 일본순시선에 대해 포격을 가했을 때 각각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변화의 추이를 고찰한다.

2.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전의 독도 영유권 인식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서 연합국은 전후 일본의 영토범위를 결정했다.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1951년 2월 6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마모토(山本利) 위원이 종전 후 독도를 포함한 일본영토의 영역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외무당국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단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크게 류큐(琉球)열도나 지시마(千島)열도 문제에 앞서 가고시마현 오시마군에 소속되었던 사츠난(薩南)제도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를 포함한 사츠난제도, 또는 지시마열도에 가까운 하보마

2)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3) 최장근(2005)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pp. 33-71.
4) 정미애(2010.5)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공간』 vol.7, pp. 206-221.
5)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1948~1976년), pp.41-137.

www.kci.go.kr

이, 시코탄과 같은 곳이 단지 위도문제 등으로 점령군의 관할 하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시마네현의 죽도와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토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관계를 행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류큐열도나 지시마열도와는 별도로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들 중 큰 곳이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나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부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관할 하에 있었던 곳은 일본의 영토로 반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하다.」[6]고 하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위원이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일본영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위도문제 등으로 점령군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종전이전에 일본의 도도부현에 소속되었던 지역은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래에 지적된 지역은 일본영토로 처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③점령군의 관할 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마미오시마를 포함한 사츠난제도, 지시마열도에 가까운 하보마이와 시코탄, 죽도 등이다. ④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야마모도 위원은 일본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수단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점령 당국 혹은 연합국 당국을 상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대충 일본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7] 라고 하여 연합국을 상대로 일본영토로 반환되도록 정부의 노력을 재촉하고 있다.

당시의 독도의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SCAPIN 677호에 의해 행정적으로 한국관할 하에 있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은 독도를 종전이전에 일본의 도도부현 즉 시마네현에 소속된 지역이라고 단정하여 점령군 관할 하에 있는 독도가 한국영토가 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죽도를 영토적으로 편입 조치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일본제국주의가 침략

6) 「1951년 2월 6일, [007/189] 10-중의원-외무위원회-3호」, p.41.이하에서는 「『일본국회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 1948~1976, 동북아역사재단편」을 생략함.

7) 「1951년 2월 6일, [007/189] 10-중의원-외무위원회-3호」, p.41.

8)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 pp256-262, 신용하(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지식산업사, pp. 185-193. 최장근,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제71집2권, 2009, pp.505-521.

www.kci.go.kr

한 영토에 해당된다.[9] 이러한 영토문제의 본질에 입각한 주장이 아니고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이 강하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측의 인식은 한국 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단이노(団伊能) 참의원의 외무위원은 '죽도'(독도)[1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실은 이 문제에서 맥아더라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나갔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울릉도 남쪽의 '죽도', 리앙쿠르암이라고 하는 곳은 어업 면에서도 아주 소중한 곳이며, '일본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귀속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단 하나의 외딴 낙도이기 때문에 이곳을 어느 나라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시마네현 오치군(隱地郡) 사키어업협동조합장(崎漁業共同組合長) 다카노 칸타로(高野勘太郎) 외 13명(제65호)도 「'죽도'어장의 조업제한 해제에 관한 진정서를 1951년 10월 18일 중의원 수산위원회, 11월 27일 중의원 수산위원회에 2번에 걸쳐 제출」하여 [11] 맥아더라인이 해제되도록 일본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상의 1951년 2월 6일 외무위원회에서 단이노(団伊能) 참의원과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 독도와 일본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독도가 맥아더라인에서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에 있었다는 사실, ②어업적 측면의 중요성에서 일본의 관할이 되어야한다는 사실, ③맥아더라인은 영토문제와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최종적인 영토조치가 아니라는 것, ④독도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지리적으로 일본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 ⑤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반드시 일본영토에 복귀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⑥단 이노(団伊能) 참의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이전에 독도가 당연히 일본영토로 처리될 것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9) 山辺健太郎, 梶村秀樹, 堀和生, 内藤正中 등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임.

10)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죽도' 인식을 고찰하는 연구이므로 한국입장의 경우는 독도, 일본입장의 경우는 '죽도'라고 표기하기로 함.

11) 「1951년 10월 20일, [013/189] 10-중의원-수산위원회-4호」, p.43. 「1951년 11월 27일, [020/189] 12-중의원-수산위원회-19호」, p.43.

www.kci.go.kr

3.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그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1951년 10월 22일 중의원 국회에서 「평화조약」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때에 야마모토(山本利) 위원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정부에 질문했다. 즉 「제3조(조약문)에 관련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보면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조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죽도는 원래부터 시마네현의 관할이었고 중요한 어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죽도'가 우리 영토인지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 등에 이전되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2]라는 것이었다.

위의 내용은 1951년 10월 22일 대일평화조약 체결의 결과를 일본국회의 중의원에서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의원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만들어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죽도'가 우리 영토인지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 등에 이전되어야할 것인지」라고 문의하는 것으로 보아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위원 구사바(草葉)는 「현재의 행정구역에 '죽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평화조약에서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13]라고 하여 추측성의 발언으로 답변했다.[14]

연합국이 SCAPIN 677호로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여 행정관할권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의 영국과 미국의 초안 1차~5차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명히 그 지위를 결정하고 있었다.[15] 그런데 일본이 로비한 결과 미국은 6차초안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영연방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연합국은

12) 「1951년 10월 22일, [015/189] 10-중의원-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6호」, p.43.
13) 구사바(草葉) 정부위원, 「1951년 10월 22일, [015/189] 10-중의원-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6호」, p.43.
14)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學出版會, pp. 347-349.
15)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 1-278.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출판부, pp. 227-208.

www.kci.go.kr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회피하게 되었던 것이다.[16] 이를 가지고 일본정부가 '죽도'가 일본영토로 분명히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중의원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일본영역참고도」를 배포하여 왜곡된 발언을 하면서부터 일본 측에서 독도영유권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다.[17] 물론 독도지위는 연합국이 SCAPIN 677호 이후 대일강화조약에서 그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SCAPIN 677호의 결정이 유효하여 본질적으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18]

4. 한국의 평화선선언에 대한 합법성 인식

(1) 독도의 공군 폭격연습장 지정과 '죽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의 비준으로 맥아더라인이 철폐되면 일본어선이 울릉도 및 독도근해에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여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선 내에 일본의 '죽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했다.

그 후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선을 둘러싸고 그 합법성과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야마모토 위원은 1952년 5월 23일 죽도의 영유권에 관해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을 때 그어진 맥아더라인에 걸쳐 있던 일본해의 죽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이점에 대해서는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상대측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19]라고 하여 한국이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일본 측은 전문위원조차도 독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평화선의 선언으로 일본 어선들의 독도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 1952년 7월 26일「미군용시설 토지에 관한 협정」으로 독도가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20] 일본정부는 이번 폭격연습장지정은 일본영토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16)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17) 每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每日新聞社, pp. 3-21.
18) 대장성령, 총리부령, 독도는 한일 간의 타협이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침략하려했던 것이고 한국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한일 간의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대일평화조약에 2국간의 조약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19) 야마모토 위원, 「1952년 5월 23일, [024/189] 13-중의원-외무위원회-26호」, p.46
20)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268.

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1952년 5월 23일 야마모토 위원은 폭격지 지정(1952년 7월 26일)과 독도영유권에 대해 「죽도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더욱이 일본영토로서 선언된 것은 1905년 2월의 일이므로 한일합병(1910)보다 이전의 일로 바로 이점 때문에 죽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에 주둔군의 훈련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 죽도 부근지역을 훈련지로 지정된다면 이 영유권이 일본의 것이라고 쉽게 확인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곳이 훈련지로 지정되는 것을 외무성에서 바라고 계신다거나 하는 점이 있는지?」[21]라고 질문했다. 독도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지 않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 국한된 정보로서 한국 측의 논리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독도의 훈련지 지정에 대해 정부 측의 이토 해설위원은 1952년 7월 26일 「훈련지를 먼 바다로 이동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본해의 죽도에서도 폭격과 대지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2]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외무성이 미국 측에 로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야마모토 위원은 「훈련지로 지정이 되면 강치 등이 서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주민의 권익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23]라고 하여 독도에 이미 강치가 멸종된 지 오래되었고 주민조차도 거주하지 않는 섬임에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독도지견(知見)[24]에 대한 무지로서 그것이야말로 독도가일본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체결 직후의 일본 측 특히 일본정부위원 조차도 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형적 역사적 외교적 지견은 물론이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승만라인'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

일본정부는 평화선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불법 경계선이라고 하여 '이승만라인'이라고 부른다. 이승만라인에 대해 1952년 1월 30일 사사키(佐々木盛) 외무위원회 위원이 일본정부위원에 대해 평화선의 성격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①평화선은 영해 이외의 공해지역에 선박의 자유 항해를 인정하지만, 국방상, 자원보호를 위한 경계이므로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메리카대륙의 선례를 따라 선언한 국가주권선이라는 주장이

21) 야마모토 위원, 「1952년 5월 23일, [024/189] 13-중의원-외무위원회-26호」, p.47.
22) 이토(伊東)해설위원, 「1952년 7월 26일, [027/189] 13-중의원-수산위원회-50호」, p.49
23) 야마모토 위원, 「1952년 5월 23일, [024/189] 13-중의원-외무위원회-26호」, p.47.
24) 田村清三郎(1965.10) 『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總務部總務課, pp. 116-142.

다. ②일본은 평화선을 “해양자유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어업협력의 기본개념과도 서로 맞지 않은 것이며, 국제사회의 통념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③사사키(佐々木盛)외무위원은 일본에서도 맞불을 놓는 식으로 동일한 성격의 경계선을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선에 대한 성격과 일본정부의 인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마모토 위원은 1951년 1월 30일 ‘이승만라인’의 합법성에 관해 「니시무라 조약국장으로부터 죽도는 우리나라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중략) 이번 조약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총사령부의 의향도 충분히 참작된 조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도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발표한 것 역시 미국 측의 양해를 얻은 결과 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25]라고 하여 한국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은 선언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니시하라 정부위원은 「우리 측으로서도 이승만 선언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한국정부에 명확하게 알렸으며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점 또한 강조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의 한일회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절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26]라고 하여 미국의 의중에 대한 답신을 피하고 일본정부의 입장만 반복했다. 또한 평화선이 완전한 불법이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한일회담에서 논의해야할 한일 양국 사이의 향후과제로 삼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원 나카무라 고하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회담에서 쌍방의 어족보호의 차원에서 어업협정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도 관계당국에 있어서 각각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7]라고 하여 한일회담에서 다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야당 전문위원께서 니시무라 조약국장으로부터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발언은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알이지 못할 정도로 당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28]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정부의 입장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승만라인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일본정부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

25) 야마모토 위원, 「1951년 1월 30일, [021/189] 13-중의원-외무위원회-2호」, pp.44-45.
26) 니시하라 정부위원, 「1951년 1월 30일, [021/189] 13-중의원-외무위원회-2호」, pp.44-45.
27) 나카무라 고하치 정부위원,「1953년 2월 23일, [032/189] 15-참의원-수산, 법무, 외무위원회..-1호」, p.57
28) 総務省(검색일: 2009.5.10)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401000004.html.

www.kci.go.kr

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SCAPIN 677호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볼 때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독도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야당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위원들은 독도가 전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위원 나카무라 고하치(中村幸八)는 이승만라인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죽도가 이승만라인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라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29]라고 하여 일본영토인 죽도가 이승만라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논리는 평화조약에서도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논리가 된다.

5. 독도의 폭격훈련장 해제에 대한 영유권 인식

미국은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폭격훈련장에서 제외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폭격훈련장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했다.[30] 한국 국방부가 1953년 2월 27일 웨이란드 미극동군 사령관으로부터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연합국 사령관이 인정하여 미공군의 독도 폭격훈련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발표했다.[31]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일합동위원회가 행정협정으로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32]

일본국회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보도로 인하여 외무와 법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심의를 했다. 위원장 도쿠가와 요리사다(德川賴貞)는 1953년 3월 5일 「죽도에 관해서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영토임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왔습니다만」[33], 「죽도문제는 평화회담 때 이미 일본의 영토라는 점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있을 터입니다. 제(伊達源一郎)가 그 당시 니시무라 조약국장께 여쭤봤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9) 나카무라 고하치 정부위원, 「1953년 2월 23일, [032/189] 15-참의원-수산, 법무, 외무위원회..-1호」, p.57

30)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 273.

31) 나카무라 고하치(中村幸八)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2.

32) 「竹島問題」 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 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33) 도쿠가와 요리사다(德川賴貞) 위원장,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0.

www.kci.go.kr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하셨다」[34]라고 하여 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확정되었는데 미국이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평화조약에서는 독도가 한일 어느 국가의 영토라고 그 지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거짓으로 공표했던 것이다.

국무총리가 「(독도문제는) 평화조약의 해석문제가 된다면 조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조약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35]라고 하여 평화조약상으로는 '죽도'가 일본영토임에 분명하다고 해석한다면 국무총리가 독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단 이노 위원이 「만약 한국이 실력을 행사하여 이 섬에 가는 어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 섬의 영유를 주장한다거나 혹은 이 섬을 점령하여 일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일어날 경우」의 대응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갑자기 무력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36]는 입장이었다. 즉 한국이 자신의 영토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독도가 전적으로 일본영토임을 부정하는 발언이 된다.

이러한 정부주장에 대해 소네 에키 위원은 「저도 이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37]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이른바 미국의 훈련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근거를 흐리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어떤 사정으로 훈련지로부터 제외될 경우, 역으로 한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이쪽에서 제공하는 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조약의 해석으로 과연 이 죽도는 일본주권에서 분리되는 지역이나 혹은 잠자고 있는 주권이라고 불리고 있는 오키나와(沖縄)나 오가사와라(小笠原)와 같은 특수한 주권지역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독립하는 조선의 판도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 한 평화조약의 조항이 적어

34) 나카무라 고하치(中村幸八)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0.
35)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총리,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4.
36)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국무총리,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4-65.
37) 소네 에키,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5.

www.kci.go.kr

도 한국 측을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38]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단의원도 1953년 3월 5일 행정협정이 관해서 정부해석을 비판하여 「원래 행정협정 혹은 지금의 군사령관의 발표는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 기타 편의상 나온 것으로 미국군이 영토 등에 관해 외교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39]라고 했고, 평화조약에 관해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성립되겠지만.... 원래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규정 내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40]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의거해서 '죽도'가 일본영토이고, 미일행정협정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임이 확인된다고 하는 주장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일본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단 이노 위원이 부속도서 취급에 관해 「이 죽도는 울릉도 남쪽에 있는 도서로 제주도나 다른 두 섬을 규정할 때 주변의 암초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죽도가 울릉도의 부속 암초라는 식으로 해석될까 우려됩니다.」[41]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카무라 고하치 정부위원은 「울릉도와 죽도와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속 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요인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42]라고 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나카무라(中村幸八) 정부위원은 1953년 3월 5일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한국 측 주장의 진위에 대해 「어제(3월 4일) 단지 군에서 폭격훈련을 정지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공식견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43]라고 하여 미국정부가 직접적으로 전달한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죽도는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의 일부로서 오랜 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관리구역이었던 적은 없다.」[44]라고 하여 일본의 고유

38) 소네 에키,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5.
39) 단 이노(團伊能),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7.
40) 단 이노,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67.
41) 단 이노 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70.
42) 나카무라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70.
43) 시모다 다케조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74.
44) 나카무라 정부위원, 「1953년 3월 5일, [037/189] 15-참의원-외무.법무위원회연합심의..1호」, p.70.

www.kci.go.kr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45]

시마가미 위원은 1953년 6월 26일 현재의 '죽도'상황에 대해 「현재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의 죽도라고 하는 섬을 한국이 불법 점거했습니다.」「이에 대해 해상경비대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생각입니까」[46]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기무라(보안청장관) 국무대신은 「우리 측의 경비대가 출동하는 것은 최종수단입니다. 그때까지 가능한 평화적인 해결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며 현재 그 방침을 논의하는 중입니다.」[47]라고 하여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일 죽도가 일본영토라면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죽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尾崎勝男)는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미국정부와 협의해서 얻은 조치입니다. 따라서 합동위원회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약으로 죽도의 귀속은 설령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만라인, 다이마루사건은 영공침범 등의 문제와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48]라고 하여 한국 측이 이승만라인을 넘어오는 일본어선에 대해 총포를 가하는 신변의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일합동위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이승만라인'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6. 한국의 '죽도' 점유에 대한 '죽도' 영유권 인식

시마네현의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1953년 5월 28일 한국어선 10척과 어민 30여명이 상륙해서 패류 및 해조류를 어획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산청에 보고했다. 그 후 6월 20일쯤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죽도에 다시 갔지만 이때는 파도가 심해서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한 번 더 갔을 때 한국어민 6명이 있었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날씨가 회복되어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배가 올 때까지 더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를 허락했고,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島根縣 隱地郡 五箇村)라

45) 최장근(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pp. 97-139.
46) 시마가미(島上) 위원, 「1953년 6월 26일, [042/189] 16-중의원-내각위원회-4호」, p.84.
47) 기무라(木村) 국무대신, 「1953년 6월 26일, [042/189] 16-중의원-내각위원회-4호」, p.85
48) 오자키 가쓰오 국무대신, 「1953년 3월 6일, [039/189] 15-참의원-예산위원회-30호」, pp.74-75

는 푯말과 불법어업을 금한다고 하는 푯말을 세워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7월1일에 순시선이 다시 한 번 죽도에 가보니 이미 6명의 한국인은 없었으며 세워두었던 푯말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무성은 6월 22일에 한국대표부에게 이 죽도는 한국어민이 불법 상륙하여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부로부터 죽도는 한국영토의 일부이며 따라서 일본 측으로부터의 항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49]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측이 독도를 점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최근 일본 측이 이 섬에서 한국의 어선 및 어민을 나포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7월 2일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한국외무부 대변인이 2일 한국정부는 죽도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어제(1953년 7월 3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한국이 죽도에 함정을 파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오카자키 국무대신은 1953년 7월 8일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 「이 죽도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했던 영토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섬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나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50]라고 하여 외무대신이 직접 평화조약에도 독도영유권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일본영토임에 분명하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시마네현고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무대신 오카자키는 한국의 실효적 점유 상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이 죽도는 사람이 살기가 불가능한 섬입니다. (중략) 다만 우리로서는 우선 순시선이라든가 감시선을 될 수 있는 대로 빈번하게 보내서 한국 측이 실제로 미역을 따러오는 것을 막고 가능한 우리어민들을 그쪽에 보내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1]라고 하여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자, 평화조약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분쟁지역으로서 일본이 한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었다.

49) 오자키 가쓰오 국무대신, 「1953년 7월 8일, [044/189] 16-중의원-예산위원회-18호」, p.87.
50) 오자키 가쓰오 국무대신, 「1953년 7월 8일, [044/189] 16-중의원-예산위원회-18호」, p.88.
51) 오자키 가쓰오 국무대신, 「1953년 7월 8일, [044/189] 16-중의원-예산위원회-18호」, p.88.

7. 일본순시선에 대한 발포사건과 '죽도'영유권문제

(1) '이승만라인'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

1953년 7월 12일 일본순시선이 독도주변에 접근하였을 때 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마쓰우라 세이치(松浦淸一)이 「이번 달 12일(1953년 7월) 오전 8시경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헤쿠라가 죽도 주변 해역을 순시하던 중에 한국국기를 게양한 무장경관이 승선한 10톤 정도 되는 흰색어선 2척과 5톤 정도의 청색어선이 1척이 헤쿠라에 접근해 와서 어떤 경고도 없이 사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돌아왔다고 합니다만」[52]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승만라인'의 일본정부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견해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한국의 포격사건에 대해 나카무라 정부위원은 「이승만라인은 결코 국제법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라인 안으로 들어온 일본어선을 나포한다든가 그 외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우리 측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는 이승만 라인 안에서의 어선 나포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의를 하고 또 어선의 반환과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의 제1, 제2의 다이호마루(大邦丸) 사건 때에는 특히 살인사건마저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엄중하게 항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그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이 성의 있는 회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회답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회답을 받아 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지의 태도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답을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일이 짐작되지 않습니다.」[53]라고 하여 한국정부는 평화선이 불법이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반박을 전적으로 부정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항의 이외의 조처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주장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쓰우라 세이치(松浦淸一)는 '이승만라인'과 어장과의 관계성에 대해 「일본정부의 주장이 약해서 이승만라인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천 몇 백척의 어선에 종사하고 있는 3만 수천 명의 선원이 생업을 잃게 되고 연 어획량 22만 톤, 75억 엔이 날아가 버리므로 일본 식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농림대신은 존선 해역에 서 일본어선의 조업이 언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

52) 기무라 토쿠타로(木村篤太郎) 국무대신, 「1953년 7월 14일, [046/189] 16-참의원-내각위원회-13호」, p.89.

53) 나카무라 고하치 정부위원, 「1953년 2월 27일, [033/189] 15-중의원-수산위원회-22호」, p.58

www.kci.go.kr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 국무위원 호리 시게루(堀利茂)는 「이승만라인을 둘러싼 지역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나라 어업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회담의 어업부문을 담당할 외교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외교당국에 강하게 요구하여 그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54]라고 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양국 간의 의견 차이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이호마루사건의 대책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는「다이호마루나 죽도문제는 한국 측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 국제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한 정부의 외교가 유익하기 때문이라거나 강경하기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측의 오해를 바로잡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55]라고 하여 한국 측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차원을 넘어 외교적 사안임을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이승만라인이 전적으로 불법이라는 인식에서는 벗어났다.

(2)사법재판소 기탁안의 대두

시모다 조약국장은 죽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경찰의 불법 입국자에 대한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만, 죽도문제라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아도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략) 영토분쟁의 경우, 국제재판소에 해결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교섭에서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국제재판 같은 것도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56]라고 하여 죽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오하시(大橋忠) 위원은 「정부는 교섭이나 제3국의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지당한 것입니다. (중략) 이대로 이 사건을 유야무야로 처리하여 그들이 죽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넣는데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들의 태도로부터 생각해볼 때 쓰시마도 내 놓라는 식의 말을 입에 올리고 나아가 이키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여 죽도문제를 잇키와 쓰시마 섬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오다카(小高) 위원은 「죽도문제와 같은 확실한 사건에

54) 호리 시게루(堀利茂) 국무위원, 「1953년 7월 15일, [048/189] 16-참의원-본회의-22호」, p.94.
55) 이시이 미쓰지로 국무대신, 「1953년 7월 15일, [048/189] 16-참의원-본회의-22호」, pp.92-93.
56) 시모다 정부위원, 「1953년 7월 28일, [051/189] 16-중의원-수산위원회-19호」, pp.104-105.

대해서는 국제재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57]「일본헌법에 뭐라 되어 있든지 안보조약에 있는 대로 일본은 기본적인 자위권을 갖고 있고 이것이 경찰이든 보안대이든 군대가 되든, 적이 침범해 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58]라고 하는 것처럼, 야당의 일본국회의원은 모두 죽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도문제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영토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주장은 죽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마쓰다 위원은 이키와 쓰시마에 대해 외무성이 「그러한 불법적인 조치는 신속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59]라는 것에 대해 「이키와 쓰시마와 죽도는 같은 일본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60]라고 하여 이키와 쓰시마처럼 죽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아시다(芦田) 위원은 일본정부의 죽도문제에 대한 태도를 비난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7월 12일에 죽도 해안에 접근하였을 때에 37,8명의 조선인이 죽도에 상륙해있었고 해안에는 무장한 조선의 배가 1척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시선은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이것은 해안보안청의 보고이기 때문에 정부도 물론 알고 계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읽고 우리들은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위축되어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이 비굴한 체념이 되어 국민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려고 하는지 부디 총리대신의 답변을 바랍니다.」[61]라고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고, 또한 「총리는 죽도의 문제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만, 결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62]라고 할 정도로 일본정부는 죽도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키섬과 쓰시마섬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키자키 국무위원(외무대신)은 독도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57) 오다카(小高) 위원, 「1953년 7월 29일, [052/189] 16-중의원-수산위원회-20호」, p.107.
58) 오하시(大橋忠) 위원, 「1953년 7월 18일, [048/189] 16-중의원-외무위원회-16호」, pp.102-103.
59) 시모다 정부위원, 「1953년 7월 28일, [051/189] 16-중의원-수산위원회-19호」, p.106.
60) 마쓰다(松田鐵) 위원, 「1953년 7월 28일, [051/189] 16-중의원-수산위원회-19호」, pp.106-107.
61) 아시다(芦田) 위원, 「1953년 7월 30일, [055/189] 16-예산위원회-26호」, pp.110-111.
62) 아시다 위원, 「1953년 7월 30일, [055/189] 16-예산위원회-26호」, pp.110-111.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영토에 침입해 오는 것을 자위의 힘으로 쫓아내어도 됩니다만 한국 측은 이 죽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 그것은 일종의 국제분쟁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할 성질이 아니며 헌법에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해서 지금 한국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장에 어떤 결점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것은 국제분쟁으로 제소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한국을 상대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63]라고 하여 죽도문제가 국제분쟁임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3) '죽도'문제의 한일회담 의제화 의도

당시는 한일회담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한일회담에서 평화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이다.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5가지로 첫째는 한일 간의 기본관계 확립의 문제, 둘째는 전쟁 청구권 처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셋째는 선박의 문제, 네 번째는 어업문제, 다섯 번째가 국적처우문제입니다.」[64]라고 하여 어업문제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었다.

시모다 정부위원은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 제9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도문제에 관련해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죽도는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찰권의 문제이다.」[65]라고 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했다. 또한 우에무라 관방장관도 나미키(並木) 야당위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받고 「보안청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죽도에는 일본 보안청의 해상경비대 소속의 선박은 파견하지 않을 것이고, 「해상경비대소속의 선박은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상대 군함에는 대항하지 않는다.」[66]라고 하여 독도문제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고 한일회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67]

---

63) 오카쟈키(岡崎) 국무대신,「1953년 8월 1일, [057/189] 16-중의원-외무위원회-25호」, pp.114-115.
64) 시모다 정부위원, 「1953년 8월 5일, [060/189] 16-중의원-외무위원회-27호」, p.132.
65) 시모다 정부위원,「1953년 8월 7일, [063/189] 16-중의원-외무위원회-28호」, p.139.
66) 나미키 위원, 「1953년 8월 7일, [063/189] 16-중의원-외무위원회-28호」, p.138.

8. 맺으면서

이상에서 일본국회의 의회기록을 통해 대일평화조약 체결로부터 그 후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방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인식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정부는 독도가 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이승만대통령은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독도를 한국영역에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는 일본에 의해 분쟁지역화 되어갔던 것이다. 평화선 선언에 대응하면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셋째는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 한국은 평화선이 맥아더라인을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주권선이라는 것이다. 이 평화선 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평화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넷째는 일본순시선이 한국영토인 독도에 접근하다가 독도수비대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한국에 항의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점유를 막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여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다섯째,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한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는 바로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각 시기의 사건별 독도영유권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52년 평화선 선언 시에는 대일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던 것이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분쟁지역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67) 최희식(2009) 「한일회담에서 독도영유권문제-한국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국가전략』 제15권 4호, pp. 117-138.

www.kci.go.kr

【参考文献】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pp.41-137.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p. 72.

_____(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 1-278.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256-262.

_____(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지식산업사, pp. 185-193.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227-208.

정미애(2010.5)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일본공간』 vol.7, pp. 206-221.

최장근(2005)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pp. 33-71.

_____(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pp. 97-139.

_____(2009)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4호의 의미 분석-일본의 영토문제와 독도지위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2권, pp.505-521.

최희식(2009) 「한일회담에서 독도영유권문제-한국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국가전략』 제15권 4호, pp. 117-138.

大西輝男(2004) 『獨島』 제이앤씨, pp. 86-87.

下條正男(2006)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109.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學出版會, pp. 347-349.

田村清三郎(1965.10)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島根縣總務部總務課, pp. 116-142.

每日新聞社編(1952) 『對日平和條約』 每日新聞社, pp. 3-21.

○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일자.

○ 總務省(검색일: 2009.5.10)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401000004.html.

○ 「竹島問題」 일본외무성(검색일: 2009.5. 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www.kci.go.kr

要 旨

本稿は対日平和条約が締結された前後の時期に日本政府が‘竹島’の領有権について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か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特に日本の国会議事録に見られる内容を中心に分析した。国会議事録の性格は日本政府の政策に対して専門委員が政府委員に質疑で政策の内容をただすものであるので、竹島の政策策定当時の認識を伺えるいい素材であると言える。研究成果としては、対日平和条約を締結する以前には竹島が必ず日本の領土であるとの確信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かし専門委員が政府に対して対日平和条約で日本の領土にな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た。対日平和条約においては竹島の地位は確定されなかった。その理由は、竹島は無人島で韓国と日本が領有権を争っていたので連合国の間に意見が統一されなかったか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対内的に対日平和条約で竹島が日本領土として確定されたと嘘をついた。その結果日本国民の中に国会議員さえそのような認識を持っていたのである。それは誤った認識であった。その後韓国が平和線を宣言してその境界線を越える日本船舶を拿捕するか銃撃を射っ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韓国側に負わせるに失敗した。結局日本政府は韓日会談で論議することにして竹島を紛争地域の扱いをした。このように竹島に対する日本政府の領有権認識は流動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の認識が欠如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

キーワード : 平和線、李承晩ライン、対日平和条約、竹島、独島、領有権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

www.kci.go.kr